

1. 개정이유

생명공학·의료 분야의 고안에 필수적인 유전자 서열목록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이 개정(2022.7.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국내 규정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 서열목록의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 기반 마련(안 제 4조, 제13조의5, 별지서식 제1호)

유전자 서열목록의 제출과 관련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 관련 발명의 원활한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22. ~ 6.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명세서에 적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한”을 “수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열목록은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0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서열목록

- (1) 서열목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핵심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및 【서열개수】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 (2) 【서열개수】란에는 명세서에 적힌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를 적고, 【첨부서류】란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 1부”라고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 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 출원) ①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명세서에 적고, 그 서열 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후단 신설>	제4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 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 출원) ① ----- ----- ----- ----- ----- 수록한 ----- ----- ----- ----- ----- ----->. <단서 삭제> ----- ----- ----- ----- ----->. 이 경우 서열 목록은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② 서열을 포함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② ----- ----- ----->. 이 경우는 법 제1

제13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그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기간을 말한다. 1. <u>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 출원인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열목록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u> 2. ~ 8. (생략)	<u>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하는 것으로 본다.</u> 제13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 ----- ----- -----. 1. <u>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 출원인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u> 2. ~ 8. (현행과 같음)
---	--